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나1021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등]

---

##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3. 6. 1.

판 결 선 고 2023. 7. 13.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61413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4,113,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3. 22.자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113,6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 특별히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F이 아내 E을 통해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친척 H, F을 통해 피고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며 피고를 운영하는 점, 소외 회사가 2014. 10. 17. 주식회사 I와 E 소유 J아파트 K호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16. 3. 22. 피고가 중첩적 계약인수한 점 등을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반면, 피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업회사법인으로 법적 성격, 사업 목적, 주주와 인적 구성<sup>1)</sup> 등을 달리하는바, 소외 회사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일정 기간 F으로 동일하였고, 소외 회사가 체결한 계약 중 일부를 피고가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와 피고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돼 원고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호, 판사 이원범, 판사 김지연

1) 피고의 직원 37명 중 중 소외 회사의 직원과 중복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3명(L, M, N)에

불과하다.